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3차)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9.

##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2. 사업규모 : 22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24. 8. 12.(월) ~ 예산소진시까지

4.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5. 대상자 선정 방법 : 접수순서로 지원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완료일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함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 제출,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에 한하며, 도착일자를 순서로 접수함)

- 보내실 곳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환경관리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지원사업 담당자

## 7. 지원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 세부적인 사항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적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관련자료 불임)

### 1.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2-1】

가. 지원내용 및 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 실제 설치비의 90% 지원

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수량 제한 없음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0 ~ 600A	0 ~ 500mmH <sub>2</sub> O	-40 ~ 100℃	0 ~ 14pH
오차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 <sup>3)</sup>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4 ~ 20mA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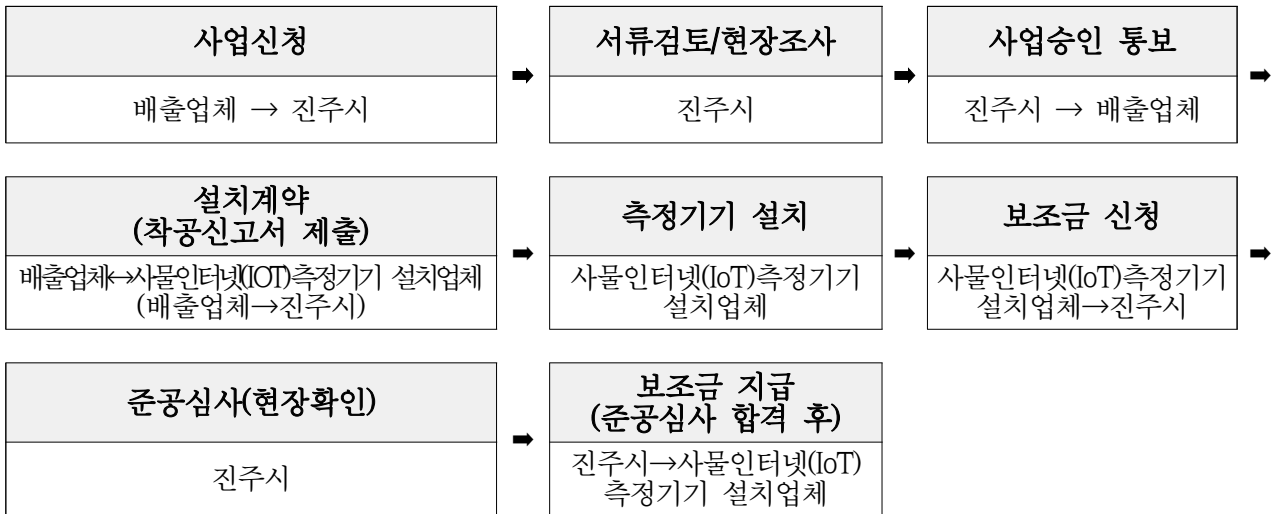
### 나. 우선지원 :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완료일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함

### 다.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붙임 2-서식 5】 와 구비서류를 진주시예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나.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대상사업(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배출시설의 경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현장조사 가능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사업승인)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소에 개별 통보

라.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서 제출 **【붙임 2-서식 10】**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진주시에 제출(단,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1개월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해 계약 체결기간 연장 요청 가능)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진주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 6.)**”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 가능

바. (보조금 신청 및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붙임 2-서식 12】 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붙임 2-서식 13】 ,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붙임 2-서식 14】** 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보조금 신청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붙임 2-서식 16】 ,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추가구비서류(배출업체 및 설치업체의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를 준공서류 함께 제출

사. (보조금 지급)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기타 사항

## 1. 보조금 회수

### 가.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 나. 보조금 환수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서식 17】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

### 다.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등 미가동 사유가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미가동 사유가 명백하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2. 기타

### 가.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 01.)」 및 진주시의 결정에 따른다.

### 나. 제출서류는 공고문의 첨부서류와 작성안내 등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예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보완 및 반려가 될 수 있음.

### 다. 그 외 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사업 담당자(749-865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